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4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윤창현·권명호·정운천

한무경ㆍ이종성ㆍ최형두

이철규・안병길・조수진

박대수 · 김선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,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.

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하여 그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와 유사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있음. 19

97년에 「공정거래법」에 카르텔(부당한 공동행위) 참가자가 그 참가사실을 자진신고하고,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, 즉 과징금 혹은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2004년까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2005년 개정 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이후 활성화가 되었음.

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려는 것임(안 제449조 등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1조제9항제2호 중 "제449조"를 "제450조"로 한다.

제439조제2호사목 중 "제449조제3항"을 "제450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449조를 제450조로 하고, 제4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9조(형벌감면)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·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,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형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제4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)	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)
① ~ ⑧ (생 략)	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9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	
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	
할 수 있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	2
반하여 <u>제449조</u> 에 따른 과태	<u>제450조</u>
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	
은 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⑩·⑪ (생 략)	①·① (현행과 같음)
제439조(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)	제439조(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)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	
거쳐야 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조치·명령 등을 하	
는 경우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<u>제449조제3항</u> 에 따른 과	사. 제450조제3항

 태료부과처분

 3. (생 략)

 <신 설>

3. (현행과 같음)

제449조(형벌감면) 제174조, 제17
6조 또는 제178조제1항을 위반
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리행위를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·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의 규명,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범인의 체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있다.

<u>제449조</u>(과태료) (생 략)

<u>제450조</u>(과태료) (현행 제449조와 같음)